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가 신설됨('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안내 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존 '21.12.31.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 받는 의료기관은 '22.1.31.까지 수가 적용기간을 자동 연장함.

- 붙임 1.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합본) 1부.
 2.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1부.
 2-1.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합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대한간호협회장

주무관	김원희	행정사무관	윤민수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	------------	-------	------------	--------	------------

전결 2021. 12. 22.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42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보험급여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6 팩스번호 044-202-3934 / bliss0710@korea.kr / 대국민 공개